

사례에 기반한 혁신 모색——PwC, 복건성 최초의 국제조세 사전결정 타결 지원

2024.08
Issue 16

개요

최근 몇 년 동안 각 지역에서는 조세사전결정(Advanced Tax Ruling) 매커니즘에 대한 탐색 과정이 가속화되었으며 관행이 나날이 성숙해졌습니다.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남사구, 광동성 무명시, 해남성 동방시, 해남성 정안현, 흑룡강성 칠대하시 등 여러 지역의 세무당국은 조세사전결정 업무 매커니즘 관리방법을 공포했으며, 최근 상해에서는 여러 조세사전결정의 성공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세사전결정 매커니즘의 실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 세무위험을 낮추고 컴플라이언스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세무국과 기업 간의 분쟁을 줄이고 조세관리비용을 절감하여 투자와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세사전결정에 대한 지역별 동향에 대해서는 PwC Newsflash 2024 년 11 호, 2024 년 1 호, 2022 년 20 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¹

이와 더불어 PwC 도 이미 일부 기업들을 협조하여 조세사전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PwC 는 모 기업을 도와 조세조약상 우대혜택에 대하여 조세사전결정 의견을 수취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복건성의 최초 “국제조세사전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Newsflash 에서 우리는 사례의 배경과 조세사전결정의 추진 과정을 공유드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

사례 배경

이번에 우리가 조세사전결정을 완료하도록 도와드렸던 기업은 복건성 복주시에 위치한 외상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입니다. 2024 년 기업은 그 네덜란드 모회사에 배당금을 분배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에서 규정한 배당금 조세조약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였습니다. 즉,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파트너십기업 제외)이며,

아울러 배당금 지급 회사의 최소 25% 자본금을 직접 보유한 경우, 5%의 원천소득세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및 《조세조약 중 “수익적 소유자”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²⁾(국가세무총국 공고[2018]9 호, 이하 “9 호 공고”라 함)에 따르면, 배당금에 대해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수익적 소유자”의 신분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회사가 지배회사로서 수행하는 투자지분 관리활동이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른 판단과 관행을 따르고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쟁점 배당금 금액이 꽤 큰 편이었으므로, 기업은 이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PwC 로 하여금 세무당국과 소통하여 관련 배당금 분배의 후속 관리 상황과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을 파악하여 조세 컴플라이언스를 보장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추진 과정

프로젝트 추진 초기에 복주 현지에서는 아직 조세사전결정 매커니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지만, 복주시 세무국은 국제조세사전결정 적극 추진 등의 업무를 포함한 “세로통-해상 실크로드-세수징(税路通—海丝路 税收情)” 서비스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세로통”은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일대일로” 공동 구축 10 주년을 맞이한 계기로 만든 국경 간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 브랜드로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전결정 진행 경과와 비즈니스 운영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연구한 후, 복주시 국제세수관리과는 확실성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였으며, 복주시 국제조세사전결정에 대한 내부관리방법 제정을 선도하였습니다. PwC 는 이를 계기로 삼아 기업을 협조하여 배당금 분배에 대한 조세조약 우대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조세사전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면 회의 소통 및 자료 보충을 거친 후 세무당국은 기업의 네덜란드 모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신분을 인정하고 조세조약상 혜택을 적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결정에 대해 서면 의견을 작성하고 기업에 세무당국이 날인한 《조세사전결정 의견서》를 발급합니다.

경험 요약

이번 조세사전결정의 모색은 복건성 세무당국에게는 혁신적인 조치이며, 복건성 최초의 사례이자 전국적으로 몇 안되는 국제조세사전결정 사례 중 하나입니다. PwC 는 추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조세사전결정을 처리하는 절차를 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사항**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례는 조세조약상 배당금 혜택에 대한 것입니다. PwC 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조세조약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세무국과 기업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 신분, 비거주자기업의 고정사업장에 대한 판단, 로열티와 서비스료의 구분 및 분석, 국경 간 양도 시 양도차익 조항의 적용 등의 경우, 조약 조항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설명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혜택은 “자체 판단, 신고 및 적용, 향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보관”의 방식으로 처리되므로 기업은 비교적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항에 대해 조세사전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면, 비교적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업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조세조약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조세비용을 절감하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공개된 사례들 중, 국경 간 조세와 관련된 사전결정 사례는 10 건 이내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더 많은 세무당국이 국제조세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발급하여 기업의 경영예측을 안정시키며 조세 및 비즈니스 운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결정 매커니즘과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다수의 지역에서는 관련 관리방법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2021 년 발표된 《세수징수관리개혁의 추가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대기업 조세사전결정을 모색하고 실행하며 관련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최적화할” 것을 명확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의 세무당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관련 업무 매커니즘 문건을 만들었거나 성공적인 사례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사전결정에 관해서 중국은 “기존 사례를 기반으로 처리한다”는 길을 채택했으며, 세무국과 기업은 모두 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현지에서는 아직 조세사전결정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세무당국이 결정 매커니즘의 모색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추진력을 보여주었으며, 세무당국이 이를 매우 중요시하여 성/시/구 레벨의 세무당국이 조세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기업과 소통하고 불과 4 개월만에 《조세사전결정 의견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세 불확실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업은 주동적으로 세무당국과 사전결정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거나 세무국과 기업 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요약

PwC의 경험에 따르면, 기업이 조세사전결정을 통해서 조세 확실성을 얻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사전결정의 신청 비용, 효익 및 상업적 고려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은 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준비하고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세무당국에 공개해야 할 재조정 거래 정보 및 그 가능한 영향에 대한 추정
- 불확실한 사항의 세무 영향 금액 추정
- 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 기술 연구 및 판단을 진행하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
-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무당국 및 부서
- 사전결정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예상 기간
- 달성 가능한 세무 효과 예상 등

조세 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 조세 사항에 대한 전방위적인 분석과 결정 프로세스 신청의 실무 경험은 조세사전결정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세무국과 기업 간의 소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적시에 세무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전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주석

1. 북경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 조세 및 비즈니스 운영 환경 최적화 (2024년 11호)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2/chinatax-news-may2024-11.pdf>
2024 조세 정책의 중요한 혁신 해설: 상해 조세사전결정 시범 시행, 조세 확정성 제고 (2024년 1호)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4q1/chinatax-news-jan2024-1.pdf>
각 지역의 지역 간 조세사전결정 모색, 국가/지역의 협조발전전략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 (2022년 20호)
<https://www.pwccn.com/zh/china-tax-news/2022q3/chinatax-news-aug2022-20.pdf>
2. 《조세조약 중 "수익적 소유자"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781/content.html>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0) 3819-2531 younggi.y.choi@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뉴스플래시(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全维度中国税务资讯平台“税界”3.0全新上线 不止于随身知识导航，更是你的专属税务智囊



苹果手机下载
(iOS 10以上)



安卓手机下载
(Android 6.0以上)



- 安卓手机也可以在腾讯应用宝中搜索“税界”进行下载
- “税界”网页版链接：<https://shuijie.pwcconsultantssz.com>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2024年8月30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www.pwccn.com

© 2024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